

수출입통관 기본서 개정표(2023ver.)

개정년월 : 2023. 6.

1. 주요 개정사항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16p	5. 통관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5. 통관 <u>1) 통관</u>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u>2) 전자상거래물품</u> 전자상거래물품이란 사이버물(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한다.	관세법 제2조 제19조
18	<u>3)기간과 기한의 비교</u> (중 략)	<u>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u> 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법제1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1.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u>4) 납부기한 연장 취소와 납부고지</u> 세관장은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관세법 시행령 제2조 ± 기존 3)의 번호 변경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때에는 15일이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기간과 기한의 비교 (중 략)	
20	(1) 공휴일 기간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예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 포함)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3) 장애로 인한 납부불가 국가관세종합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정전, 프로그램오류, 비정상적인 가동 등으로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기한내에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공휴일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u>토요일 및 일요일</u> <u>「공휴일에관한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u> <u>「근로자의 날 제정예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u>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u> (3) 장애로 인한 납부불가 국가관세종합전산망, <u>연계정보통신망</u>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정전, 프로그램오류, 비정상적인 가동 등으로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u>기한까지</u>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u>국가관세종합전산망,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u>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관세법 제8조제 3항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20p	국가관세종합전산망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세법 2020. 12. 22., 일부개정
28	4. 과세환율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과세가격)를 원화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상관 없으나 일반적으로 달러 등 외화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적용법령에 따른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단,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사용전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 보세건설장은 적용법령의 시기가 원칙과 달리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나, 과세환율은 사용전 수입신고한 날로 한다는 의미이다. (중략)	4. 과세환율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과세가격)를 원화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상상관없으나 일반적으로 달러 등 외화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사용전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중략) (중략 내용 현행과 같음)	관세법 시행령
p20	국가관세종합전산망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세법 2020. 12. 22., 일부개정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33	2) 간접적인 지급액 중략 ①, ② (생략)) ③ (신 설) ④ (신 설) ⑤ (신 설) ⑥ (신 설) ③ 그 밖의 간접적인 금액 (개정 ⑦로 변경)	(2) 간접적인 지급액 중략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④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⑤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외국훈련비, 외국교육비, 또는 연구개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⑥ 그 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⑦ 그 밖의 간접적인 금액	관세법 시행령 제30조
47	3)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4) 적용 불가능한 가격	3) 적용 불가능한 가격 (중략) 3) 내용 변경내역 없음. 4)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위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시행규 칙제7조 의2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① 수입신고 전에 변질, 손상된 물품 ②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③ 임차 수입물품 ④ 중고 물품 ⑤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⑥ 범칙물품 ⑦「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 ⑧ 그 밖에 과세가격 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물품	+ 3), 4) 순서 교체

1) 특수관계자간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기간은 1년이다.

2) 특수관계자간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기간은 1년이다.

3) 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참고로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에 대한 자진신고에 따른 환급은 2021.1.1.부터 시행한다.

4) 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참고로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에 대한 자진신고에 따른 환급은 2022.12.31.부터 시행한다.

5)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6)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7) 제도의 남용방지를 위하여 성실업체에 대하여만 포괄신청을 허용한다.

8) 제도의 남용방지를 위하여 성실업체에 대하여만 포괄신청을 허용한다.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65	<table><tr><th>품명</th><th>세율(%)</th></tr><tr><td>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td><td>55 92만 6천원 + 463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50 37만4백원+185만2천 원 초과하는 금액의 50</td></tr><tr><td>2. 삭제 <2019.2.12.></td><td>25</td></tr><tr><td>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 류 다. 녹용</td><td>30 25 32</td></tr><tr><td>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용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td><td>20</td></tr></table>	품명	세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55 92만 6천원 + 463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50 37만4백원+185만2천 원 초과하는 금액의 50	2. 삭제 <2019.2.12.>	25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 류 다. 녹용	30 25 32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용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	20	<table><tr><th>품명</th><th>세율(%)</th></tr><tr><td>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td><td>47 721,200원+4,808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288,450원+1,92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td></tr><tr><td>2. 삭제 <2019.2.12.></td><td></td></tr><tr><td>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 류 다. 녹용</td><td>19 18 21</td></tr><tr><td>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용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td><td>15</td></tr></table>	품명	세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47 721,200원+4,808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288,450원+1,92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2. 삭제 <2019.2.12.>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 류 다. 녹용	19 18 2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용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	15	관세법 시행령
품명	세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55 92만 6천원 + 463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50 37만4백원+185만2천 원 초과하는 금액의 50																						
2. 삭제 <2019.2.12.>	25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 류 다. 녹용	30 25 32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용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	20																						
품명	세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47 721,200원+4,808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288,450원+1,92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2. 삭제 <2019.2.12.>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 류 다. 녹용	19 18 2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용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	15																						
p. 66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표현 수정																				
p.76	(4) 구매 대행업자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4) 구매 대행업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	관세법 제19조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라한다)가 ①화주로부터 해당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②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을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	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 구매대행업자와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 a. 자가 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b.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제1항 관세법 제19조 제1항
pp.110~111	(2)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송달방법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居所(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2)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송달방법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居所(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내용 삭제
p123	5) 보정이자 ① 기간 및 이자율 세관장은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5) 보정이자 ① 기간 및 이자율 세관장은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현 수정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p126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 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관세법 2022. 12. 31.일부 개정
129	1. 가산세 세관장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한다. 관세법상 가산세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 각기 적용되는 경우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신고인의 불성실함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신 설>	1. 가산세 세관장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한다. 관세법상 가산세는 5종류로 분류되며, 각기 적용되는 경우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신고인의 불성실함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u>① 신고 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u> <u>②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u> <u>③ 수입·반송 신고 지연 가산세</u> <u>④ 휴대품·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u> <u>⑤ 즉시반출 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u>	가산세 종류 명시로 이해력 증진 관세법 제42조
130	(2)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① (생략)	(2)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① (현행과 같음)	자구수 정 관세법 제156 조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136	② 가산세 일부 면제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고 납부지연가산세만을 부과한다. 이는 귀책사유가 납세의무자에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간의 경과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이다. <table> <tr> <th>구분</th> <th>신고불성실가산세</th> <th>납부지연가산세</th> </tr> <tr> <td>면제여부</td> <td>면제</td> <td>부과</td> </tr> </table> ①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¹⁾	구분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여부	면제	부과	② 가산세 일부 면제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고 납부지연가산세만을 부과한다. 이는 귀책사유가 납세의무자에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간의 경과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이다. <table> <tr> <th>구분</th> <th>신고불성실가산세</th> <th>납부지연가산세</th> </tr> <tr> <td>면제여부</td> <td>면제</td> <td>부과</td> </tr> </table> ①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²⁾	구분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여부	면제	부과	2021. 12. 21, 일부개정
구분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여부	면제	부과													
구분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여부	면제	부과													
p152	2) 관세환급의 요건 ①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②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2) 관세환급의 요건 ①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 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②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u>관세법 제156조</u>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p.154	2) 대 상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³⁾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②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대 상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⁴⁾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 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②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③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 ③ 신설
p 154	5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또한 여행자가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자진신고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5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또한 여행자가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①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2021. 12. 21, 일부개정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p152	①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②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①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 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②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관세법 2022. 12. 31.일부 개정
p157	각주 223) 2021.1.1.부터 시행한다.	각주 221) 2022.12.31.부터 시행한다. 각주 222) 관세법 제106조의2 추가	2021. 12. 21, 일부개정
p169	5 통관의 보류 통관의 보류란 통관절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⁵⁾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①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② 신고시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③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5 통관의 보류 통관의 보류란 통관절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⁶⁾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①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② 신고시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③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246조의3제1항)가 필요한 경우	2021. 12. 21, 일 부 개 정 기 존 의 누 락 된 설명 추 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경우 ④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⑤ 그 밖에 관세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2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246조의3제1항)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⑤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⑥ 그 밖에 관세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①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관의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제1항 각 호의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관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p.176	(3) 불인정 공정 (6단위 세번변경의 불인정) (중략) <u>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u> ① ~ ⑤ ⑥ <u>가축의 도축작업</u>	(3) 불인정 공정 (6단위 세번변경의 불인정) (중략)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FTA협정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① ~ ⑤ ⑥ 가축의 도축작업 (<u>다만, 한-미FTA, 한-카 FTA 등 예외</u>)	<u>관세법</u> <u>시행규칙</u> <u>제74조</u> <u>제4항</u> 한-미FTA A 도축-CO 변경기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p.230	(3)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또는 반출에 대한 입화 및 확인 ②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및취급에 대한 입화 및 확인 ③ ~⑥ (생략)	(3)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또는반출에 대한 참관 및확인 ②보세구역안에 장치된물품의 관리및취급에 대한 참관 및 확인 ③ ~⑥ (생략)	관세법 시행령 제185 조																				
p.240	(2) 과징금의 부과 세관장은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 과징금의 부과 세관장은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u>한편, 이 경우 과징금의 분할 납부는 허용된다.</u>	관세법 제178 조제3항																				
p238	(2) 예 외 <table><tr><th>구 분</th><th>특허기간</th></tr><tr><td>보세창고</td><td rowspan="2">10년 이내</td></tr><tr><td>보세공장</td></tr><tr><td>보세판매장</td><td>5년 이내</td></tr><tr><td>보세전시장</td><td>박람회 기간 고려 세관장 정함</td></tr><tr><td>보세건설장</td><td>건설공사 기간 고려 세관장 정함</td></tr></table>	구 분	특허기간	보세창고	10년 이내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5년 이내	보세전시장	박람회 기간 고려 세관장 정함	보세건설장	건설공사 기간 고려 세관장 정함	(2) 예 외 <table><tr><th>구 분</th><th>특허기간</th></tr><tr><td>보세창고</td><td rowspan="2">10년 이내</td></tr><tr><td>보세공장</td></tr><tr><td>보세판매장</td><td rowspan="3">박람회 기간 고려 세관장 정함</td></tr><tr><td>보세전시장</td></tr><tr><td>보세건설장</td></tr></table>	구 분	특허기간	보세창고	10년 이내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박람회 기간 고려 세관장 정함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관세법 2022. 12. 31. 일부개정
구 분	특허기간																						
보세창고	10년 이내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5년 이내																						
보세전시장	박람회 기간 고려 세관장 정함																						
보세건설장	건설공사 기간 고려 세관장 정함																						
구 분	특허기간																						
보세창고	10년 이내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박람회 기간 고려 세관장 정함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p238	각주 347)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혜)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제1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한다.	각주 345)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혜)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제1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22.12.30 전부개정																				
p247	③ 원료과세 포괄신청	③ 원료과세 포괄신청	2021.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세관장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⁷⁾ ㉠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실도 및 원자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세관장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⁸⁾ ㉠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운영할 것	12. 21, 일부개정
p.255	(4) 특허기간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5) 특허의 갱신 특허를 받은 자는 한 차례(다만, 중소기업 등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4) 특허기간 (내용 삭제) (4) 특허의 갱신 특허를 받은 자는 <u>두 차례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한 차례당 5년 이내로 한다.</u>	관세법 제176조의2